

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5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자동차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100% 의무 구매 하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출자·출연기관이 자동차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100% 의무구매 하도록 함.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- ① 시장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,  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  
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(이하 이  
조에서 “구매”라 한다)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"서울특별시 공용차량"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,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서 관리 운영하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(임차차량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</p> <p>5. ~ 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~ 6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 ① 시장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(이하 이 조에서 "구매"라 한다)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 ① 시장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(이하 이 조에서</p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른다

③ ~ ④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.

③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-----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영 제18조의2에서 정한 -----.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른다.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“구매”라 한다)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〈삭제〉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

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~ ④ (개정안과 같음)



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단서 중 “제외한다”를 “제외한다.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- ① 시장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(이하 이 조에서 “구매”라 한다)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.

제6조제2항 중 “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른다”를 “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시행령 제18조의4제1호”를 “영 제18조의4제1호”로

한다.

제7조의3제1항 중 “시행령 제18조의5제1항”을 “영 제18조의5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9조”를 “영 제19조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"서울특별시 공용차량"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,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서 관리 운영하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(임차차량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</p> <p>5. ~ 6. (생략)</p> <p>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 ① 시장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(이하 이 조에서 "구매"라 한다)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</p>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  
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 
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  
고할 수 있다.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  
한 사항은 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 
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 
에 따른다

③ ~ ④ (생략)

제7조의2(충전시설 설치대상) ① 다음  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 
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 
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 
전시설(이하 “충전시설”이라 한다)을  
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충전시설 설치  
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 
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 
있다.

1.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  
에 따른 시설

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7조의3(충전시설의 종류) ① 충전시설  
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

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.

<삭제>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  
음)

② -----  
----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 
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 
에 따른다.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충전시설 설치대상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영 제18조의4제1호 -----  
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3(충전시설의 종류) ① -----  
----- 영 제18조의5제1항-----

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.

② ~ ③ (생략)

제8조(홍보 및 교육) ① 시장은 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홍보 및 교육) ① ----- 영 제19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